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50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바로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남광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황석현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3. 1. 17. 접수 제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전 대여 및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2021. 12. 31. 4,000만 원, 2021. 5. 11. 3억 6,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1) 2)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에 C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2023차전43). 위 법원은 2023. 1. 26.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3. 2. 1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같은 법원에 C를 상대로 대여금 3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2023차전36). 위 법원은 2023. 1. 26.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3. 2. 14.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1) C와 피고는 2023. 1. 13.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1,959,749,64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3. 1. 17. 접수 제6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권리의 종류	채권자	청구금액 또는 채권최고액
1	가압류	주식회사 D	147,792,958원
2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693,382,472원
3	가압류	E 주식회사	187,367,180원
4	근저당권	F조합	960,000,000원
5	근저당권	G	500,000,000원
합계			2,488,542,61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 합계 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본안에 관한 판단사항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본안전항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3. 1. 13. 체결되었으나 실제로 피고와 C는 2022. 3.경 피고가 C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C의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2022. 3.경 C와 피고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과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H(대표이사 I)과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이 2022. 3.경 주식회사 H의 사업 일체를 주식회사 J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L(대표이사 M)가 주식회사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1. 5. 3.부터 C의 사내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를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이 M인 사실, 피고의 실소유자가 N와 대표이사 O(N의 동생), K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사업의 양수인 측에 해당하는 N, O, K가 양수주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양수주체의 변경을 예정하였고, C에 대한 기업실사를 거친 후 자산양수도의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2022. 12. 29. 피고를 설립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C의 사업을 양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동일성이 있는 연속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시점인 2022. 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동일성이 있는 연속된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2022. 3.경에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실, 나아가 채무자에 해당하는 C에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여금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물반환으로서 피고는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C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우석, 판사 김혜림, 판사 신철순

별지

1)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뒤의 제2의 가. 2)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가 C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